

제89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23년 06월 08일(목) 11:00	■ 장소	발전노조 회의실
------	------------------------	------	----------

■ 참석 : 재적 40명 중 37명 참석

■ 서기 및 감표위원 : 서기(변은영), 감표위원(중앙선관위-이행우)

■ 회순통과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실 사업보고
5. 소식지/성명서 모음

■ 심의안건

<안건1>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원안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의결한다.

<선거관리 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후보등록) ① 각급 임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의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다. 2.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3월 지부총회 개최일 5일전 17시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19조(후보등록) ① 각급 임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의원 선거의 후보등록은 다음과 같다. 2.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부총회 개최일 5일전 17시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2023.06.8. 개정]

<선거관리 규정>

현행	개정(안)
제25조(운동제한) 후보자 또는 운동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회사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상대 후보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각급(지부, 본부, 중앙) 노조집행부는 조합의 공식명의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지지 등을 할 수 없으며, 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5조(운동제한) 후보자 또는 운동원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회사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등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상대 후보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각급(지부, 본부, 중앙) 노조집행부는 조합의 공식명의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지지 등을 할 수 없으며, 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8. <u>각급 임원선거 후보 입후보 공고일부부터는 조합비를 이용한 간담회 등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u>[2023.06.8. 개정] 9.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선거관리 규정>

현행	개정(안)
제26조(선거무효) ② 각급 선거에 있어 당선자가 제25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행위로 인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제26조(선거무효) ② 각급 선거에 있어 당선자가 제25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u>제9호</u> 행위로 인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 위원회와 상급선거관리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선거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선거관리위원회 합동회의에서선거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2023.06.8. 개정]
--	---

<안건2> 민주노총 총파업 기금 납부에 관한 건

▶ 원안 중 1안으로 의결한다.

1안 - 6월 지부 조합비 교부 시 해당 금액 선 공제 후 배분

<안건3> 상급단체 지침 전국집중 집회 시 투쟁기금 집행의 건

▶ 11대 집행부 임기 중 상급단체 지침에 의한 전국집중 집회 시 투쟁기금으로 집행하는것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계획-

7.15. 공공운수노조 주관 민주노총 결의대회

① 취지

-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 중 7.15. 결의대회에 ▶민영화-직무성과급제저지 ▶공적연금 강화 ▶공공성-노동권 확대 등 노조의 핵심 투쟁 의제를 전면화해 노조 주관으로 진행함.
- 이를 통해 노조 주요 요구를 사회쟁점화하는 한편, 주말집회인 점을 감안해 파업 여부에 상관없이 조직력을 총집중해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복무함.
- 9~10월 노조 공동파업을 앞둔 조직적 기세를 높이고, 민주노총 7월 총파업 이후의 하반기 투쟁에 대한 결의를 고양함.

<안건4>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연구에 관한 건

▶ 원안 통과

기타 토의

▶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 공공운수노조 집중집회에 최대한 조직을 결의한다.